

수원고등법원 2022. 7. 8 선고 2021나1604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일 담당변호사 최준기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경록

변 론 종 결 2022. 5. 20.

판 결 선 고 2022. 7. 8.

제1 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5. 14. 선고 2018가합402167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피고와 D 주식회사 사이의 2014. 5. 8.자 매매계약취소 청구 및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의 소를 모두 각하하고,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4. 21. 체결된 매매계약을 1,487,1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8. 체결된 매매계약을 1,487,1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다. C과 D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6. 5. 체결된 정산확인서를 1,487,100,000원 한도 내에서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1,487,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와 C 사이의 2014. 4. 21.자 매매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를 950,000,000원에서 1,487,100,000원으로 확장하고, 피고와 D 사이의 2014. 5. 8.자 매매계약의 1,487,100,000원 한도 내에서의 취소 및 C과 D 사이의 2014. 6. 5.자 정산확인서의 1,487,100,000원 한도 내에서의 무효 확인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21. 체결된 매매계약을 95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4. 3. 26. C을 상대로 'C이 2010. 4. 19. 원고의 명의를 빌려 상가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등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합2640호), 위 법원은 2014. 9. 2. 'C은 원고에게 452,860,4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9.부터 같은 해 9.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C이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취하함에 따라 2014. 10. 9.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14. 4. 15. C을 상대로 ‘2004. 1. 7.부터 2005. 11. 7.까지 대여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합3067호), 위 법원은 2014. 6. 17. ‘C은 원고에게 209,6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C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2015. 12. 15.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신탁 및 매매

1) C과 그의 처 G는 2006. 4. 12. D과 C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및 G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H 소재 I건물 J호, K호, L호(이하 ‘I건물 J호, K호, L호’라고만 하고, 이 사건 부동산과 통틀어 칭할 때에는 ‘이 사건 부동산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M 주식회사를 우선수익자로 하여, C과 G가 이 사건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수탁자 D에 이전하며, 위탁자의 채무불이행 등 약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선수익자의 요구에 의하여 D이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가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6. 11. 3., 2009. 6. 2. 및 2009. 9. 15. 각 위 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를 추가하는 신탁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

2) C과 G는 2006. 4. 17. D에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이 사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후 D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수탁자로서 2014. 5. 1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C과 피고는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2,20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한다’는 내용의 2014. 4. 21.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갑 제19호증, 이하 ‘2014. 4. 21.자 매매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9, 3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채무자인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4. 4. 2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 비록 D이 2014. 5. 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과 같은 외관이 형성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2014. 4. 21.자 매매계약으로 피고 앞으로 이전된 것이다. 이로 인하여 신탁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C의 수익권이 소멸되었으므로, 2014. 4. 21.자 매매계약은 C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더욱 부족하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2014. 4. 21.자 매매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수익권의 가액인 1,487,100,000원(=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2,661,100,000원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980,000,000원 - 소요비용 및 신탁보수 74,000,000원 -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1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1,487,1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채무자인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D과 2006. 4. 12. C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D에 신탁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뒤, 2009. 6. 2. 및 2009. 9. 15. 두 차례에 걸쳐 위 신탁계약의 변경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피고와 2014. 4.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D은 2014. 5. 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른 공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C은 2014. 6. 5. D과 위 공매절차에서의 매각대금에 대한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C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D과의 신탁계약에 따라 가지는 수익권을 소멸하게 함으로써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를 한층 더 부족하게 하여 일반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D 또는 전득자인 피고는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일련의 사해행위 중 최종적 법률행위인 C과 피고 사이의 2014. 4. 21.자 매매계약, 수익자인 D과 전득자인 피고 사이의 2014. 5. 8.자 매매계약을 각 신탁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수익권의 가액인 1,487,1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C과 D 사이의 2014. 6. 5.자 정산합의서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임을 확인하며, 피고는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위 1,487,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2014. 4. 21.자 매매계약 취소 청구 부분

1) 피고의 본안전 항변 요지

원고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등 소송(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합7625,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에서, E는 2015. 3.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므로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에게 처분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7. 11.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판단

원고가 관련 소송의 소장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D의 소유이므로 채무자인 C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E는 2015. 3. 4.자 답변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신탁재산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한 수익권은 C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3. 발행된 등기부등본을 증거로 제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므로 원고는 그 무렵 위 등기부등본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이전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위 등기부등본에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8.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그 취소를 구하고 있는 법률행위는 C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4. 4. 21.자 매매계약이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 2014. 4. 21.자 매매계약의 존재까지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2014. 5. 8.자 매매계약 취소 청구 부분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하여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전득자 사이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생기는 것이고 채무자 또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이 경우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행하여진 법률행위에 국한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다76518 판결 등 참조). 원고는 D이 사해신탁의 수익자이고,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피고는 전득자라고 주장하면서 수익자인 D과 전득자인 피고 사이의 2014. 5. 8.자 매매계약의 취소를 주장하는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4. 5. 8.자 매매계약은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에 더하여 D과 피고 사이의 2014. 5. 8.자 매매계약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 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법 제406조), 이는 제척기간인바, 원고는 2014. 5. 8.자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2. 5. 19. 위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그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14. 5. 8.자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다. C과 D 사이의 2014. 6. 5.자 정산합의서 무효 확인 청구 부분

확인 소는 법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고,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또한 확인 소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등 참조).

원고는 C과 D 사이의 2014. 6. 5.자 정산합의서가 통정허위표시로 작성된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 부분 소는 2014. 6. 5.자 정산합의서의 당사자도 아닌 피고를 상대로 제3자인 C과 D 사이의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소를 통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6. 5.자 정산합의서의 무효 확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C 또는 D에게 미치지 아니할 뿐더러 그로 인하여 원고 주장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권리관계, 즉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수익권 가액인 1,487,100,000원 및 이에 대한

자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법률관계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정산합의서의 무효 확인을 받는 것은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원상회복의무 부담 여부에 관한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워 확인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14. 6. 5.자 정산합의서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5쪽 8행부터 제10쪽 2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5쪽 11 내지 16행을 1) 이 사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는 최종적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제8쪽 24행의 “10) 임대차 및 근저당권관련 확인”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0) 임대차 및 근저당권 관련 확인

매각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가 존재하는 경우 매수자는 매수자의 책임으로 해당 임대차계약을 정리하여야 하고, 이에 대하여 매도인은 일체 책임(임대차보증금반환, 명도 등)을 지지 않습니다.

나. 판단

1)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참조).

2) 사해행위취소권은 사해행위로 이루어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사해행위에 의해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채무자에게 복귀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책임재산을 일탈 또는 감소시키는 재산처분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3) D은 2006. 4. 17. 이 사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C과 피고는 2014. 4.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인정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C과 피고 사이에 2014. 4. 21.자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 매매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D에 있었으므로 2014. 4. 21.자 매매계약은 타인의 권리의 매매(민법 제568조)에 해당하여, C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피고에게 이를 이전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그런데 C은 피고에게 2014. 4. 21.자 매매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사실이 없고, 다만 D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피고와 체결한 '2014. 5. 8.자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그러므로 C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4. 4. 21.자 매매계약으로서 C의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재산의 일탈이나 감소가 일어났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C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4. 4. 21.자 매매계약이 취소되더라도 그로써 D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4. 5. 8.자 매매계약'이 당연히 취소되거나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어서 2014. 5. 8.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의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될 수 없으므로 C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될 수도 없다.

4) 원고는, C이 채무면탈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공매 형식을 취하여 피고가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사실상 신탁법 제5조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에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무효이다.」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D이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에 무효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2014. 4. 24.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74,000,000원으로 매수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게다가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법률행위는 C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4. 4. 21.자 매매계약이므로 여기에 신탁법 제5조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

즉 피고가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지급한 매매대금 74,000,000원은 D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공고를 하면서 공고한 제1차 공매예정가격 2,661,100,000원에 비하여 현저하게 저가이기는 하나, D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매공고를 하면서, '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가 주식회사 F, 채무자 C, 채권최고액이 2,730,000,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② 매수자가 근저당권을 현상 그대로 인수하는 조건으로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근저당권자를 통하여 문의하기 바라며 매도인은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③ 매각 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가 존재하는 경우 매수자는 매수자의 책임으로 해당 임대차계약을 정리하여야 하며, ④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는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진행된다.’라고 공고한 사실은 앞서 인정하였는데, 이러한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14. 4. 24.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가격 74,000,000원으로 낙찰 받은 것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는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진행되었지만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공매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근저당권 채권최고액과 확인되지 않은 임대보증금 수액 때문에 공매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가 계속 유찰되다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74,000,000원에 매수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5) 결국 위탁자인 C이 신탁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수익권을 상실하게 된 것은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2014. 4. 21.자 매매계약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D이 2014. 3. 28.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공고를 하면서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피고가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74,000,000원에 매수한 데 따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6) 이에 더하여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C과 피고 사이의 2014. 4. 21.자 매매계약 체결 당시, C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수익권이 적극재산으로서 가치가 있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제공될 수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가)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의 가치는 장차 신탁이 종료되었을 때 예상되는 신탁재산 가액에서 소요비용과 신탁보수 등을 공제하고 거기에서 다시 우선수익자들에 대한 채무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사해행위 당시의 현가로 할인하는 방식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단순히 사해행위 당시의 신탁재산의 시가를 기초로 그 가치를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1140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4. 4. 8. 1차 공매기일 진행시 공매예정가격은 2,661,100,000원이었으나 입찰자가 없어 2014. 4. 24. 공매예정가격 73,830,000원으로 제35차 공매기일까지 진행되었다.

다) 피고는 2014. 4. 24. 진행된 35차 공매기일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74,000,000원으로 정하여 입찰하여 낙찰 받았고, D은 2014. 5. 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74,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은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을 ‘신탁부동산의 제세공과금 및 처분비용, D의 신탁보수, 위탁자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원리금, 위탁자의 수익’의 순서대로 집행하도록 정하였는데, D은 이 사건 부동산 처분대금 74,000,000원을 공매공고비용 2,543,750원, 감정평가수수료 2,182,400원, 신탁보수 1,184,000원, 미납관리비 40,101,120원, 미납환경개선부담금 253,870원, 2014년 교통유발부담금 750,000원, 환경개선부담금 300,000원, 부가가치세 26,684,850원으로 모두 지출하였다(갑제 37호증의 1).

7)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에서 사해행위로 취소를 구하는 C과 피고 사이의 2014. 4. 21.자 매매계약은 그로 말미암아 채무자인 C의 총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2014. 4. 21.자 매매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2014. 4. 21.자 매매계약 취소 청구 및 원상회복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고, 피고와 D 사이의 2014. 5. 8.자 매매계약 취소 청구 및 C과 D 사이의 2014. 6. 5.자 정산확인서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원고의 2014. 4. 21.자 매매계약을 95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는 청구 및 위 범위 내에서의 원상회복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피고와 D 사이의 2014. 5. 8.자 매매계약 취소 청구 및 C과 D 사이의 2014. 6. 5.자 정산확인서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의 소는 각하하며,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는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심연수, 판사 유현종, 판사 김무신

부동산의 표시

1. 1동의 건물표시

경기 성남시분당구 제2층 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 10027.6㎡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2층 호 철근콘크리구조 111.546㎡

대지권 표시

소유권대지권 10027.6분의 34.05

2. 1동의 건물표시

경기 성남시분당구 제2층 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 10027.6㎡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2층 호 철근콘크리구조 107.900㎡

대지권 표시

소유권대지권 10027.6분의 32.93

3. 1동의 건물표시

경기 성남시분당구 제2층 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 10027.6㎡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2층 호 철근콘크리구조 183.300㎡

대지권 표시

소유권대지권 10027.6분의 55.94 -끝-

